



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May 2023

WTO SPS 협정의 목적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부당한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02

주요 내용



03

'23. 4월 WTO SPS 통보 통계



한눈으로 보는
2023.4월 WTO SPS 통보 현황(33개국, 총 12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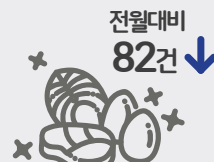
동물위생
34건

전월대비
23건 ↓



식물보호
49건

전월대비
17건 ↑



식품안전
44건

전월대비
82건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 화 | 044) 201-2080, 2081

| 홈페이지 | www.koreasps.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이메일 | wtoagri@korea.kr

| 팩 스 | 044) 868-0449

I. WTO SPS 통보 및 현황

03

II. 주요 내용

04

WTO SPS 통보문

동물위생

[싱가포르] 개·고양이의 수입위생요건 개정(안) 공고

7

[대만]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와 그 제품의 수입규정 개정(안) 공고

9

식물보호

[뉴질랜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수입위생기준 IHS 152.02 개정 공고

11

식품안전

[미국] 농약 에탈플루랄린(Ethalfuralin)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13

[영국]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요건 간소화 공고

14

[일본] 농약 2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16

WTO TBT 통보문

동물위생

[케냐] 비포장 곡물사료 저장을 위한 사일로(Silo) 요건 제정

17

III. '23. 4월 WTO SPS 통보 통계

19



Contents

SPS_{info}NEWS 집필진

| 검역정책과

연구위원

강신원(유럽 지역)

연구위원

이근필(중남미 지역)

연구위원

조은송(아시아 지역)

연구위원

정금영(오세아니아 지역)

| 농업통상과

연구위원

| 농식품수출진흥과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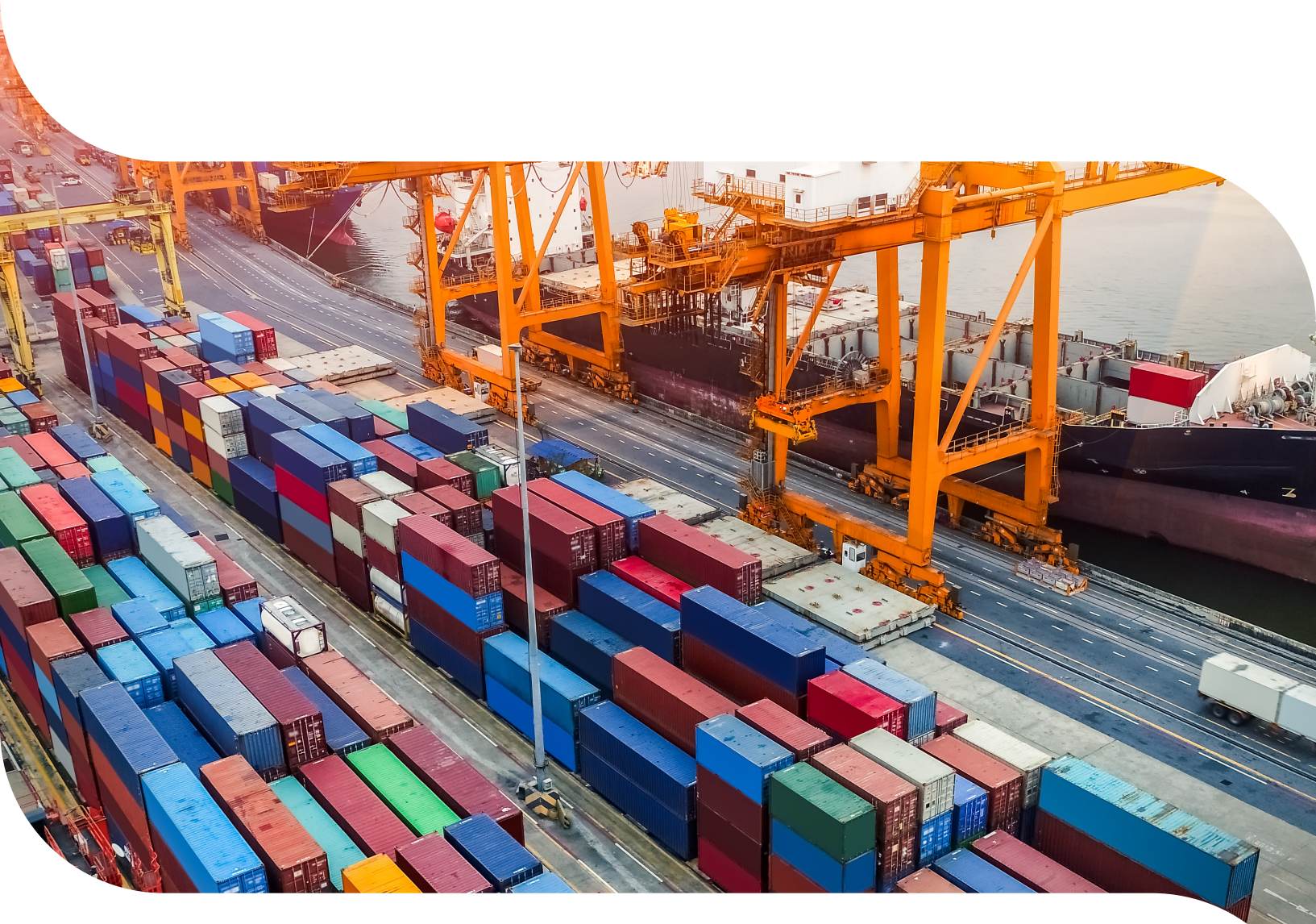
| 푸드테크정책과

연구위원

이소영(서남아·아랍권 지역)

황기선(북미 지역)

유요예(아프리카 지역)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WTO SPS 협정의 목적은 사람 건강 및 동·식물의 생명, 위생보호 등을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국제교역 시, 부당한 무역 규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SPS 조치는 가축 전염병, 식물 병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 내 첨가제, 오염물질(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등과 관련되며 SPS 협정 제7조 투명성 및 부속서 B에 의거하여 SPS 조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적용하기 전, 회원국에게 해당 조치를 사전에 통보하여 무역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필요 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02. 주요 내용

'23. 4월 말 기준, WTO SPS 통보문 및 WTO TBT 통보문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 하였습니다.

'23. 4월 말 기준, WTO에 통보된 SPS 조치 총 127건을 목적 및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품안전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물보호(42건), 동물위생(32건),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 보호(20건) 및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18건) 순이었습니다.

* 하나의 WTO SPS통보에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전체 통보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4월 SPS 주요 이슈 주간보고]

통보국 (일시)	주요 내용	품목 및 (대상국가)	비고
 러시아 (4.3) (USA/256/ C1)	병해충 썩덩나무노린재(<i>Halyomorpha halys</i>)발생에 따른 북마케도니아산 잠정 수입금지 품목 확대 - (기존)사과 → (확대)식물검역 제품	식물검역 제품 (북마케 도니아)	썩덩나무노린재는 동아시아 일대에 기생하며 국내에도 분포하여 사과, 복숭아 등 과실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임
 뉴질랜드 (4.5) (NZL/712 및 NZL/713)	한국산 (신선)배에 대한 식물검역 증명서 부기사항 추가 요건 공고 - 부기사항에 “복숭아 명나방(<i>Conogethes punctiferalis</i>) 방제조치를 시행함” 문구 표시 추가 * 효력발생일 : 의견수렴('23.5.12까지)후 시행예정('23.6.30일) 태국산 용안(Longan)과실의 복숭아 명나방(<i>Conogethes punctiferalis</i>) 방제를 위한 방사선 처리요건 변경 공고 - (기존) 250 Gy → (개정) 289Gy * 효력발생일 : '23.6.30일 이후	신선 배 (대한민국) 용안 (Longan) (태국)	현재 수출 중인 상품으로 관련부서 전달 후, 필요 시 의견 제출토록 안내 * 한국산 신선 배 수출실적 - (21~22년)100t, 약 20만불 국제기준(ISPM18)에 따라 병해충 관리를 위한 선적 전(pre-export) 식물검역 조치임
 싱가포르 (4.11) (SGP/83)	광견병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입요건 개정 및 국가/지역의 재분류 공고 - 대한민국을 광견병 위험무시국으로 분류* 하여 검역 요건이 완화됨 - 개인 화물로 반입 시, 격리요건 완화 : (기존) 10일 격리 → (개정) 비격리 - (신설) 상업목적일 경우, 10일 격리 ① 개 소유주가 5일 이상 체류 시 ② 판매목적 수입 ③ 소유주 변경 시 * 그룹2 : (아시아)한국, 일본, 대만, 홍콩 ** 효력발생일 : 의견수렴('23. 6.10일) 후 결정 예정	반려동물 (모든 국가)	국제기준(WOAH)개정에 따른 조치임 효력발생일 이후, 반려 동물 수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 전달 * 최근 반려동물 수출실적 : (19~21) 190건, ('22) 275건
 중국 (4.14) (CHN/1278)	식물검역증명서 서식 변경 공고 - 수출입 검역 및 재수출용 증명서의 서식 변경(올해말까지 계도기간 적용으로 기존 및 신규서식 허용) - (적용대상) 식물 및 식물성 산물 * 효력발생일 : '23.6.1일부터 적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 (모든 국가)	국제기준 반영을 위해 기존 서식을 변경했으며 식물검역 관련부서에 전달
 미국 (4.20) (USA/3379)	식물(절화)의 수입제한 조치 해제 공고 - 국화흰녹병(CWR) 관련 기주식물 절화 목록*을 삭제함 - 절화 수입에 의한 병해충 위험완화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 짐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요건)를 철회함 * 대상 속명(genus) : <i>Chrysanthemum</i> , <i>Leucanthemella</i> , <i>Nipponanthemum</i> ** 효력발생일 : 의견수렴('23.6.16일) 후 결정 예정	식물(절화) (모든 국가)	과거 적용되던 요건을 완화한 조치이며 기타 절화류(신선)를 소량 수출 중이므로 참고토록 관련 부서 전달

통보국 (일시)	주요 내용	품목 및 (대상국가)	비고																						
 유럽연합 (4.26) (EU/633)	신선육의 위생관리조건 설정 - 운반 시간 최대 6시간까지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종</th><th>표면 온도</th><th>표면 온도 냉각까지 최대 소요 시간</th><th>최고 기온</th></tr> </thead> <tbody> <tr> <td>양·염소</td><td rowspan="3">7℃</td><td>8시간</td><td rowspan="3">6℃</td></tr> <tr> <td>소</td><td>20시간</td></tr> <tr> <td>돼지</td><td>16시간</td></tr> </tbody> </table> - 운반 시간 최대 60시간까지 <table border="1"> <thead> <tr> <th>축종</th><th>표면 온도</th><th>표면 온도 냉각까지 최대 소요 시간</th><th>최고 기온</th></tr> </thead> <tbody> <tr> <td>양·염소</td><td rowspan="2">4℃</td><td>12시간</td><td rowspan="2">3℃</td></tr> <tr> <td>소</td><td>24시간</td></tr> </tbody> </table> * 효력발생일 : EU 관보 공표일(23.4분기)로부터 20일 후	축종	표면 온도	표면 온도 냉각까지 최대 소요 시간	최고 기온	양·염소	7℃	8시간	6℃	소	20시간	돼지	16시간	축종	표면 온도	표면 온도 냉각까지 최대 소요 시간	최고 기온	양·염소	4℃	12시간	3℃	소	24시간	신선육 (모든 국가)	Codex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이행을 위해 기존 규정을 일부 개정함
축종	표면 온도	표면 온도 냉각까지 최대 소요 시간	최고 기온																						
양·염소	7℃	8시간	6℃																						
소		20시간																							
돼지		16시간																							
축종	표면 온도	표면 온도 냉각까지 최대 소요 시간	최고 기온																						
양·염소	4℃	12시간	3℃																						
소		24시간																							
대만 (4.27) (TPKM/613)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 100일 사육조건 등이 신설되었고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및 내장 등 36개 품목*의 수입금지 * 신선 쇠고기 다짐육 제품, 소의 위장, 간, 방광, 폐, 대장, 소장 등의 원재료 형태 및 가공품 등	쇠고기 (미국, 캐나다)	對대만 수출 쇠고기 제품은 없으나 향후 미국 및 캐나다산 관련 제품의 수입금지 해제가 필요한 경우 BSE 유입 방지 조항 등 참고																						

01 [싱가포르]

개·고양이의 수입위생요건 개정(안) 공고

(G/SPS/N/SGP/83, '23.4.11.)

싱가포르 국립공원청 동물수의국(NParks/AVS)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 위생규약 제8.14장 광견병(rabies) 바이러스 감염의 개정에 따라 자국의 개·고양이 수입에 관한 동물검역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싱가포르는 개고양이 수입허용 국가목록을(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고, 각 카테고리에 속한 국가 들인 이에 따른 동물검역 요건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 NParks/AVS가 분류한 카테 고리 C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별 위험평가 결과 및 WOAH의 육상동물 위생규약 개정에 따라 카테고리 B와 C에 있던 국가들이 별표 II (Schedule II)로 재분류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별표 II에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별표 II에 개정된 조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행	개정안
제목 : 카테고리 B에 따른 국가/지역별 개·고양이 수입에 관한 동물검역 요건 수출국가/지역 : 카테고리 B 오스트리아, 벨기에, 버뮤다, 케이먼 군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특별행정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저지,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뉴칼레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하와이 및 괌만) 카테고리 C 캐나다,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대만 및 미국(하와이 및 괌 제외)	제목 : 별표 II에 따른 국가/지역별 개·고양이 수입에 관한 동물검역 요건 수출국가/지역: 별표 II 오스트리아, 벨기에, 버뮤다, 캐나다, 케이먼 군도,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특별행정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저지,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뉴칼레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네덜란드, 미국
개·고양이가 수출국/지역 또는 개·고양이 수입에 관한 동물검역 요건의 카테고리 A 및 B의 Part 1에 명시된 국가에서 수출 전 또는 태어난 후 최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체류함	개·고양이가 수출국/지역 또는 개·고양이 수입에 관한 동물검역 요건의 별표 I 및 II에 명시된 국가에서 수출 전 또는 태어난 후 최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체류함
개·고양이는 국가공인 수의사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건강하고, 감염 또는 전염성 질병의 임상 징후가 없으며, 수출 당시 여행에 적합하다고 판정 받아야함	개·고양이는 국가공인 수의사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건강하고, 감염 또는 전염성 질병의 임상 징후가 없으며, <u>수출 전 또는 수출일 당일</u> 여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받아야함
개·고양이는 국가공인 수의사의 검사를 받고, 동물검역증명서 및 백신접종증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별 코드를 포함한 마이크로 칩이 이식되었음이 확인되어야함.	개·고양이는 수출 전 또는 수출일 당일, 국가공인 수의사의 검사를 받고, 동물검역증명서 및 백신접종증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별 코드를 포함한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현행	개정안
카테고리 B 국가들의 경우: 수출 전, 최소 1개월 전에 싱가포르 국립공원청 동물수의국 (NParks/AVS)이 허용하는 불활화 백신 또는 재조합 백신을 이용한 유효한 광견병 백신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함. 이는 유효한 초기 접종 및/또는 백신 제조업자의 권고안에 따른 추가 접종을 의미함. 개·고양이는 백신 접종 후 최소 1개월 후에 혈액 시료를 채혈하여 허용가능한 광견병 항체 한도에 대해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함. 개·고양이는 검사시료(혈청) 채취일 이후 반드시 광견병 항체를 유지해야 함 카테고리 C 국가들의 경우 개·고양이는 다음 카테고리에 따라 광견병 관리에 관한 요건을 준수함 카테고리 C1 (1) 개·고양이는 수출하기 최소 4개월 전에 싱가포르 국립공원청 동물수의국(NParks/AVS)이 허용하는 불활화 백신 또는 재조합 백신을 이용한 유효한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아야 함. 이는 유효한 초기 접종 및/또는 백신 제조업자의 권고안에 따른 추가 접종을 의미함. 개·고양이는 상기 백신 접종 후 최소 1개월 후 및 수출 전 6개월 이내에 혈액 시료를 채혈하여 허용가능한 광견병 항체 한도에 대해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함. (2) 개·고양이는 검사시료(혈청) 채취일 이후 반드시 접종을 다시 해야함. 이 추가 백신접종은 수출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 져야 함 또는 카테고리 C2 개·고양이는 수출하기 최소 3개월 전 싱가포르 국립공원청 동물수의국(NParks/AVS)이 허용하는 불활화 백신 또는 재조합 백신을 이용한 유효한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아야 함. 이는 유효한 초기 접종 및/또는 백신 제조업자의 권고안에 따른 추가 접종을 의미함. 개·고양이는 안에 따른 추가 접종을 의미함. 개·고양이는 상기 백신 접종 후 최소 1개월 후 및 수출 전 6개월 이내에 혈액 시료를 채혈하여 허용가능한 광견병 중화항체 한도에 대해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함.	수출 전, 최소 1개월 전에 싱가포르 국립공원청 동물수의국 (NParks/AVS)이 허용하는 불활화 백신 또는 재조합 백신을 이용한 유효한 광견병 백신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함. 최초 광견병 백신 접종일 또는 추가 접종일로부터 최소 28일 후, 수출 전 생후 90일 이상 12개월 이하의 개·고양이는 최소 0.5 IU/ml의 광견병 중화항체 역가를 나타내는 WOAH가 규정한 검사를 받아야 함. 광견병 혈청검사는 WOAH의 광견병 표준실험실 (WOAH reference laboratory for rabies) 또는 별표 I 또는 II 국가의 각 관할당국이 승인한 별표 I 또는 II 국가의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함
[카테고리 B 국가의 경우] 동물검역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동물이 도착 시 임상적으로 건강한 경우 검역대상에서 제외됨 [카테고리 C 국가의 경우] 도착 시, 동물은 동물검역센터에서 격리됨. 격리 기간은 광견병 관리요건 충족을 위해 소유주 또는 대리인이 선택한 옵션에 따라 결정됨: 카테고리 C1 : 동물은 1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함. 카테고리 C2 : 동물은 3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함. 소유주 또는 대리인은 동물검역센터 내 격리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개인용 개·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 동물검역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동물이 도착 시 임상적으로 건강한 경우 검역이 요구되지 않음. 상업용* 개·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 도착 시 10일 이상 싱가포르 내 동물검역센터에서 격리됨. 소유주/대리인은 동물검역센터 내 격리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 다음과 같이 수입되는 경우, 개·고양이는 상업용 수입으로 간주할 것임: · 소유주가 싱가포르로 이동 후 5일이 지난 경우 또는 · 소유권자 이전(동물 입양 및 구조된 동물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싱가포르 내로 반입되는 경우 포함), 또는 · 판매용 또는 소매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판매를 위해 제공된 경우

의견제출마감일	2023년 6월 10일	효력발생일	추후 결정
관련 사이트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APHIS-2018-0007-0001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SPS/SGP/23_8803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SPS/SGP/23_8803_01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SPS/SGP/23_8803_02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SPS/SGP/23_8803_03_e.pdf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와 그 제품의 수입규정 개정(안) 공고

(G/SPS/N/TPKM/613, '23.4.27.)

대만 위생복지부(MHLW) 식품의약품청(FDA)은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수입 규정의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대만은 올해 초('23년 1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공개의견 수렴 후 캐나다산 쇠고기의 월령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제1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요건

- i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육한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 또는 대만으로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에서 태어난 소에서 유래한 것; 또는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사육된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는 대만으로 수출자격을 득한 것으로 간주함
- ii 쇠고기는 수출국 동물검역 당국이 승인한 축산물 작업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수의사의 감독 하에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도축 전 두개강(cranial cavity) 내에 압축된 공기 또는 가스 주입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stunning)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iii 쇠고기는 소의 두개골에서 유래한 특정위험물질(SRM), 선진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echanically separated meat, or advanced meat recovery) 및 도축 시 30개월 또는 그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척수(vertebral column)를 포함해서는 안됨
- iv 쇠고기를 포함한 화물은 수출국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a. 미국 농무부에 등록되었고 대만 당국이 승인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어야 하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농무부(USDA)에서 인증한 육류 작업장에서 도축된 소에서 유래하였음”이라는 문구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의 문구가 있어야 함
 - b.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등록되었고 대만 당국이 승인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어야 하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함.”과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CFIA가 대만으로 수출 가능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한 작업장에서 도축되었고, CFIA 수의사의 감독 하에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소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

제2조 표에 열거된 36종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을 포함하여 두개골, 뇌, 눈, 척수, 다진 쇠고기, 내장 및 기타 관련 제품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제3조 수입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식품안전및위생관리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 로트(lot)는 관련 법령, 규정, 행정규칙, 절차 및 기타 조치에 따라 처리될 것임

표 1, 대만 내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목록(HS Code)

HS 코드	품목
0201.30.10.10-7	뼈가 없고, 신선하거나 냉장한 소과 동물의 스페셜(Special) 등급 쇠고기 사분도체와 스테이크 부위(갈비살, 허리살, 등심살, 엉덩이살)의 다짐육
0201.30.20.10-5	뼈가 없고, 신선 또는 냉장한 소과 동물의 프라임(prime) 또는 초이스(choice) 등급 사태살(shin/shank)의 다짐육, 삼겹양지(short plate), 양지머리, 갈비살, 늑간살(rib finger)의 다짐육
0201.30.90.30-6	뼈가 없고, 신선 또는 냉장한 소과 동물의 기타 육류로 만든 다짐육
0202.30.10.10-6	뼈가 없고, 냉동한 소과 동물의 스페셜(Special) 등급 쇠고기 사분도체와 스테이크 부위(갈비살, 허리살, 등심살, 엉덩이살)의 다짐육
0202.30.20.10-4	뼈가 없고, 냉동한 소과 동물의 프라임(prime) 또는 초이스(choice) 등급 사태살(shin/shank)의 다짐육, 삼겹양지(short plate), 양지머리, 갈비살, 늑간살(rib finger)의 다짐육
0202.30.90.30-5	뼈가 없고, 냉동한 소과 동물의 기타 육류로 만든 다짐육
0206.10.90.20-7	소과 동물의 신선 또는 냉장된 식용 간
0206.10.90.30-5	소과 동물의 신선 또는 냉장된 식용 눈
0206.10.90.40-3	소과 동물의 신선 또는 냉장된 식용 뇌, 척수 및 두개골
0206.10.90.50-0	소과 동물의 신선 또는 냉장된 식용 심장 및 폐
0206.10.90.60-8	소과 동물의 신선 또는 냉장된 식용 신장 및 비장
0206.10.90.91-1	소과 동물의 신선 또는 냉장된 식용 췌장 및 자궁
0206.22.00.00-6	소과 동물의 냉동된 간
0206.29.90.10-8	소과 동물의 냉동된 식용 눈
0206.29.90.20-6	소과 동물의 냉동된 식용 뇌, 척수 및 두개골
0206.29.90.30-4	소과 동물의 냉동된 식용 심장 및 폐
0206.29.90.40-2	소과 동물의 냉동된 식용 신장 및 비장
0206.29.90.91-0	소과 동물의 냉동된 식용 췌장 및 자궁
0504.00.23.11-1	소과 동물의 장(창자 및 직장 포함), 신선 또는 냉장된 전체 또는 일부
0504.00.23.12-0	소과 동물의 장(창자 및 직장 포함) 냉동된 전체 또는 일부
0504.00.23.13-9	소과 동물의 내장(창자 및 직장 포함), 염장, 염지, 건조 또는 훈연한 전체 또는 일부
0504.00.23.21-9	소과 동물의 위, 신선 또는 냉장된 전체 또는 일부
0504.00.23.22-8	소과 동물의 위, 냉동된 전체 또는 일부
0504.00.23.23-7	소과 동물의 위, 염장, 염지, 건조 또는 훈연한 전체 또는 일부
0504.00.23.31-7	소과 동물의 방광, 신선 또는 냉장된 전체 또는 일부
0504.00.23.32-6	소과 동물의 방광, 냉동된 전체 또는 일부
0504.00.23.33-5	소과 동물의 방광, 염장, 염지, 건조 또는 훈연한 전체 또는 일부
1602.20.20.11-9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소과 동물의 간, 냉동된 것
1602.20.20.21-7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소과 동물의 간, 통조림에 든 것
1602.20.20.91-2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소과 동물의 간
1602.50.20.11-2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소과 동물의 내장(심장, 폐, 간, 대장, 소장, 비장, 위, 신장, 췌장, 방광 및 자궁 포함), 냉동된 것
1602.50.20.12-1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소과 동물의 눈, 뇌, 척수 및 두개골, 냉동된 것
1602.50.20.21-0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소과 동물의 내장(심장, 폐, 간, 대장, 소장, 비장, 위, 신장, 췌장, 방광 및 자궁 포함), 통조림에 든 것
1602.50.20.22-9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소과 동물의 눈, 뇌, 척수 및 두개골, 통조림에 든 것
1602.50.20.91-5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소과 동물의 내장(심장, 폐, 간, 대장, 소장, 비장, 위, 신장, 췌장, 방광 및 자궁 포함)
1602.50.20.92-4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소과 동물의 눈, 뇌, 척수 및 두개골

의견제출마감일

2023년 5월 27일

효력발생일

추후 결정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nattachments/2023/SPS/TPKM/23_9325_00_x.pdf (중국어)
https://members.wto.org/cnattachments/2023/SPS/TPKM/23_9325_00_e.pdf (영어)

01 [뉴질랜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수입위생기준 IHS 152.02 개정 공고

(G/SPS/N/NZL/713 '23.4.6)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는 한국산 배(Sand Pear, *Pyrus pyrifolia*) 생과실의 수입위생기준(IHS 152.02.)을 일부 개정하고 '23.6.30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습니다.

1999년 7월 29일에 공식적으로 수출이 허용된 한국산 배는 2004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864톤(US\$ 3,983)가량이 뉴질랜드로 수출되었습니다. 식물검역에 있어 뉴질랜드는 병해충의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표1과 같습니다¹⁾. 한국산 배의 경우, 위험도 1, 2에 대한 검역 병해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1, 병해충 등급별 도착지 검출 시, 뉴질랜드 조치사항

구분	도착지 검출 시 조치사항
● 위험도 1 검역 병해충	수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화물의 소독(가능할 경우) 2) 화물의 재분류(특별 조건이 적용) 3) 화물의 반송 4) 화물의 폐기
● 위험도 2 검역 병해충	수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수석식물검역관의 명령에 따라 소독(가능할 경우)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교정조치를 지체 없이 요청한다. 2) 화물의 반송 3) 화물의 폐기
● 위험도 3 검역 병해충	검역병해충 발견 시의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화물의 반송 또는 폐기, 그리고 2) 원인이 조사되어, 밝혀지고 시정될 때까지는 무역이 중단된다. 뉴질랜드 농림부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다. 수석식물검역관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증명한 교정조치가 뉴질랜드 농림부의 요령에 부합되면, 무역 중단 조치는 철회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위험도 1 검역병해충]에 해당하던 **복숭아명나방**(*Yellow peach moth, Conogethes punctiferalis*)을 [위험도 2 검역병해충]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 활동을 수행하였음²⁾을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 사항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1)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77호, 2011. 6. 15.시행] 제3조 제6항 인용

2) (원문)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appropriat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Conogethes punctiferalis*.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배 화물에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식물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본 개정안이 적용된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시행 2011. 6. 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77호, 2011. 6. 15., 일부개정]	
〈전략〉	
제3조 (한국산 배의 특별 조건)	
1. 수출 전 요령	
...	
라. 식물검사합격증명	
1)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식물검사합격증명서가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배 화물에 첨부되어야 한다.	
2)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요구한 다음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3) 한국산 배는;	
가)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사되고, 검사 결과 뉴질랜드 농림부가 명기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하고,	
나) 과실파리 방제에 효과적인 합의된 조치[별표2]를 하여야 하며, Conogethes punctiferalis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하여야 하며,(신설, 2023.6.30. 시행 예정)	
다) <i>Carposina sasakii</i>, <i>Monilinia fructigena</i>(<i>Monilia fructigena</i>), <i>Tetranychus kanzawai</i>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하거나 또는	
라) <i>Carposina sasakii</i>, <i>Monilinia fructigena</i>(<i>Monilia fructigena</i>), <i>Tetranychus kanzawai</i>이 없는 지역산 이어야 한다.	
마.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수출 전 취해야 할 조치가 충족되었으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제3조.1.라.3)의 사항이 이행되었음을 부기해야 한다(신설 문구 포함).	
〈후략〉	

의견제출마감일	2023년 5월 12일	효력발생일	2023년 6월 30일
관련 사이트	[신선과채류 한국산 배(<i>Pyrus pyrifolia</i>)-수입위생기준]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SPS/NZL/23_8729_00_e.pdf [일차산업부 기준152.02-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신선과채류의 수입 및 통관]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SPS/NZL/23_8729_01_e.pdf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77호, 2011.6.15.)]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94342#AJAX		

01 [미국]

농약 에탈플루랄린(Ethalfuralin)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G/SPS/N/USA/3377, '23.04.19.)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여러 종류 농산물 내부 또는 표면의 농약 에탈플루랄린(Ethalfuralin)의 잔류허용기준(MRL) 개정을 알려왔습니다.

개정될 M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과 동일 ■ 국내기준 없음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Ethalfuralin	■ 양파 0.01ppm(양파 국내기준 0.05ppm) ■ 고구마 0.01ppm(고구마 국내기준 0.01ppm), 대두 0.05ppm, 박과채소 0.05ppm(수박 0.05ppm) ■ 딜(Dill) 신선 및 건조 잎/햄프씨드/땅콩/유채씨/스테비아 신선 및 건조 잎/ 0.05ppm	고구마(신선), 고구마(건조), 양파(냉동), 양파(건조)	-	10/0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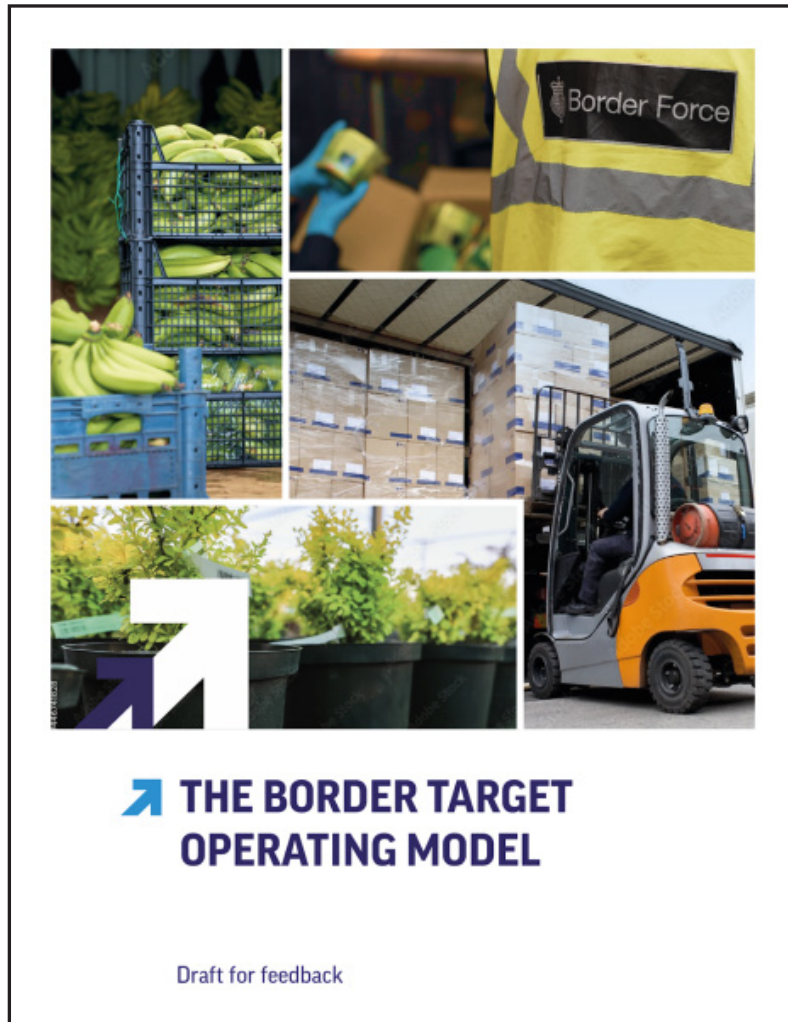
관련 사이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04-10/html/2023-07456.htm>
<https://canadagazette.gc.ca/rp-pr/p1/2023/2023-03-18/pdf/g1-15711.pdf#page=26>

02 [영국]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요건 간소화 공고

(G/SPS/N/GBR/30, '23.4.11.)



영국 환경식품농업부(DEFRA)는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요건 간소화 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20년에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의 수입식품 절차 간소화의 핵심은 효과적인 국경통제를 통한 민간 사업체의 지원입니다.

본 목적을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경통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교역국(EU 회원국 포함)의 제품입니다. 동물성 식품 및 식물성 산물의 위험도별 검사 비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동물성 식품의 위험별 검사 비율 〉

위험도	해당 제품		검역 증명서	사전 통보	신규 검사 비율			기존 검사 비율***
					서류	식별	현물	
고위험 ●		살아있는 동물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필요	필요	100%	100%*	100%*	식별 100%, 현물 100%
중위험 ●		생고기, 냉장육, 냉동육 / 육류 가공품 / 유제품; 사료용 동물성 부산물; 중위험 수산물			100%	1% ~30% **	1% ~30% **	식별 100%, 현물 15~30%
저위험 ●		가공된 상온 보관 식품 (복합식품, 육류 제품 통조림, 가공된 동물성 부산물, 일부 어육가공품)	불필요	이력 추적 관련 자료만 필요	0%	0%	0%	식별 100%, 현물 1~5%

* 일부 살아있는 동물(예. 건강한 말)은 해당 동물종에 따라 식별 및 현물 검사 비율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고위험으로 분류됨

** 일반적으로 1%~30%가 적용되나 다수 제품의 식별 및/또는 현물 검사 비율은 1%임.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일부 제품은 식별 검사 비율이 100%까지 요구될 수 있음

*** 기존의 위험 범주는 5개로 분류되어 현재의 위험 범주와 직접 비교될 수는 없으나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지표

〈 식물성 산물의 위험별 검사 비율 〉

위험도	해당 제품		신규 검사 비율			기존 검사 비율***
			서류	식별	현물	
고위험 ●		재식용 식물 - 상업용 및/또는 목본식물	100%	100%	100%	100%
		재식용 식물 - 실외식물(소매용 및 초본식물)	30%	30%	30%	100%
		재식용 식물 - 실외식물(소매용 및 초본식물)	5%	5%	5%	5%
중위험 ●		식물성 산물 - 교역 관련 위험이 확인된 품목	5% (EU 외), 3% (EU)	5% (EU 외), 3% (EU)	5% (EU 외), 3% (EU)	100%
저위험 ●		기타 모든 규제 식물성 산물	0%	0%	0%	1%

본 조치는 '23.10.31일에 채택 및 발효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마감일

2023년 5월 12일

효력발생일

2023년 10월 31일

관련 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border-target-operating-model-draft-for-feedback>

03 [일본]

농약 2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G/SPS/N/JPN/1192 및 1193, '23.4.13.)

일본 후생노동성은 농약 메타알데하이드(Metaldehyde), 시메코나졸(Simeconazole)의 잔류허용기준(MRL)을 개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개정된 M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과 동일 ■ 국내기준 없음

문서번호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JPN/1192	Metaldehyde	■ 배추 0.4ppm(국내 1.0ppm), 셀러리 0.6ppm(국내 1.5ppm)	배추 (신선, 냉장), 아스파라거스 (신선, 냉장)	12/06/2023	추후 결정
		■ 아스파라거스 1ppm(국내 0.07ppm)			
G/SPS/N/JPN/1193	Simeconazole	■ 포도 0.3ppm(국내기준 1.0ppm)	옥수수 (분쇄물·조분), 호박류 (쿠쿠르비타종) (신선 또는 냉장),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 포도(신선)	12/06/2023	추후 결정
		■ 마늘 0.05ppm			
		■ 옥수수 0.01ppm, 호박 0.05ppm, 쌀 0.2ppm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SPS/JPN/23_8925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SPS/JPN/23_8926_00_e.pdf

01 [케냐]

비포장 곡물사료 저장용 사일로(Silo) 요건 제정

(G/TBT/N/KEN/1417, '23.04.14.)

케냐 표준국(Kenya Bureau of Standards, KEBS)은 곡물 및 두류에서 발생하는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자, 사일로(Silo)¹⁾ 설계에 관한 표준규격 (DKS 2985:2023) 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격은 둥근 원탑 형태의 사일로(Silo)의 구조 및 설계에 관한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

-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가 잘되고 태양 복사열이 최소인 곳에 배치되어야 함
- 화재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혼잡한 공공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함

2. 구조적 요건

- 건축 자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독성이 없는 방수 및 방풍 재질이어야 함
- 건물과 곡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흰개미(termite) 방제처리를 해야 함
- 바닥은 습기나 해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존 지반보다 높게 시공해야 하며 균열이 없어야 함
- 새와 설치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과 지붕 사이는 잘 접합되어야 함
- 강풍과 지진에 견디기 위해 지붕에 측면 및 수직 버팀대(wind brace)를 설치해야 함
- 환풍기를 설치해야 하며 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해야 함
- 내부의 조명은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아야 함

1) 사일로(Silo): 사료인 사일리지를 벌크로 저장하는 저장고로 기온 또는 해충으로부터 물리적 보호 및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함. 저장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해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설계하여야함

3. 설비 요건

- 고용인원 구성에 따라 남녀 구분되는 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해야 함
- 살충제, 살서제, 훈증제와 같은 화학물질은 자물쇠가 있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해야 함
- 사일로 내부 제어를 위해 실험실은 수분 함량, 관능검사, 아플라톡신 적격심사 및 등급 지정 등과 같은 기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을 시설을 갖추어야 함

4. 위생 요건

- 사일로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설치류, 곤충 및 진드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함
- 분류 작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설치류 및 기타 해충이 서식하지 않으며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

5. 보관 요건

- 저장 온도는 곡물의 종류, 사용 목적, 저장 기간에 따라 달라져야 함
- 곡물에 따른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습도계를 설치해야 함
- 품질을 위해 실험실에서 지속적으로 수분 함량을 확인해야 함

의견제출마감일

2023년 6월 14일

효력발생일

추후 결정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3/TBT/KEN/23_9009_00_e.pdf



'23. 4월 WTO SPS 통보 통계

'23. 4월말 기준, WTO SPS 통보 총 127건을 국가, 주요내용,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검역(35건)

긴급조치 통보문(12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1	러시아	물도바산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의 러시아 내 이동 및 수입의 잠정 금지(3.22일)	동축산물	물도바	22/03/2023	G/SPS/N/RUS/262
2	사우디	폴란드 마조비에츠키에(Mazowieckie)주(州)산 가금육, 알 가공품 및 관련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 해제	가금육 및 알가공품	폴란드	10/04/2023	G/SPS/N/SAU/490/Add.1
3	아라비아	말전염성 빈혈(EIA)발생에 따른 우루과이산 말의 잠정 수입중지(3.29일)	축산물	우루과이	29/03/2023	G/SPS/N/SAU/500
4		구제역(FMD)발생에 따른 튀르키예산 가축의 잠정 수입중지(3.29일)	축산물	튀르키예	29/03/2023	G/SPS/N/SAU/501
5	일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방지를 위한 특정 국가(미국 및 다수 유럽국가)산 가금류 및 알가공품의 잠정 수입금지	가금육 및 알가공품	칠레;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미국	07/03/2023	G/SPS/N/JPN/1197
6	카자흐스탄	벨기에 플란데런(Flemish) 지역(HPAI 발생)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3.20일)	가금육 및 알가공품	벨기에 플란데런(Flemish)지역	02/03/2023	G/SPS/N/KAZ/135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7	태국	헝가리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육의 잠정 수입금지 (3.27일)	동축산물	헝가리	27/03/2023	G/SPS/N/THA/640
8		필리핀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육의 잠정 수입금지 (3.27일)	동축산물	필리핀	27/03/2023	G/SPS/N/THA/641
9		영국산 가금류 및 알가공품의 잠정 수입금지(HPAI 발생) 조치 (4.6일 90일간)	가금육 및 알가공품	영국	06/04/2023	G/SPS/N/THA/642
10		프랑스산 가금류 및 알가공품의 잠정 수입금지(HPAI 발생) 조치 (4.6일 90일간)	가금육 및 알가공품	프랑스	06/04/2023	G/SPS/N/THA/643
11	필리핀	스페인산 살아있는 소 및 관련 제품(축산물, 정액 포함)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해제(3.28)	축산물	모든 교역국	28/03/2023	G/SPS/N/PHL/526/Add.1
12		칠레산 살아있는 사육용 및 야생 조류, 관련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4.19일)	가금육 및 알가공품	칠레	19/04/2023	G/SPS/N/PHL/528

일반 통보문(23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13	대만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규정 개정안 공고 - 수입 쇠고기 월령제한 폐지 및 수입금지 품목(두개골, 뇌, 눈, 척수, 다짐육, 내장 등) 규정 등	축산물	캐나다; 미국	추후결정	G/SPS/N/TPKM/613
14	러시아	공란우(牛), 경주마, 식물성 사료의 수출 위생요건 개정 - 브루셀라병 연중 2회 실시요건 추가, 역내 경주마 운송시 검역질병 확인서 동봉, GMO 비포함 사료의 품질 위생요건	살아있는 소 (공란우)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RUS/263
15	모로코	가축전염병 목록 제정을 통한 동물위생보호법 개정(안) 공고 - 광견병, 구제역, 렙토스피라증, 오제스키병 등 전염병 및 관리 대상동물 구분	동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MAR/94
16		수입사료의 품질 및 위생법(안) 공고	사료 및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MAR/97
17		동물용의약품의 생산시설 품질규정 개정 - 생산시설의 기능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 설정 원칙, 예찰 방법 등	동물용 의약품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MAR/98
18	부룬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제정-도축장의 설계, 위생 및 요건 제정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BDI/50
19	브라질	어류 및 부산물(새우, 가재, 이매패류 및 살아있는 동물 제외) 수입위생요건 제정(3.21시행)	수산물	모든 교역국	21/03/2023	G/SPS/N/BRA/2146
20		새우 사체 및 그 제품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수산물	모든 교역국	21/03/2023	G/SPS/N/BRA/2147
21	싱가포르	광견병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개 및 고양이의 수입요건 개정 및 국가/지역의 재분류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SGP/83
22		국제기준(Codex)에 따른 싱가포르의 동물용의약품 118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질파테롤, 콜리스틴 외 다수(국내보다 완화)	축산물	모든 교역국	28/04/2023	G/SPS/N/SGP/80/Add.1
23	아르메니아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요건(안) 의견수렴 공고 - 특정 표식을 포함한 라벨링 부착 시, 해당 구역 내 이동가능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ARM/45
24		동물성 규제(예찰) 대상제품의 일반 위생 및 수의요건 개정 - 수정란 소의 브루셀라증 검사요건, 대화용 말의 수출 조건, 식물성 사료의 요건 등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ARM/46
25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 영토 내 동물용 소독제, 살충제 및 살비제의 유통관리 규칙 개정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ARM/47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26	영국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트리크로피르(Triclopyr), 국내기준 없음(돼지 지방, 소 간) *한국 수출품목: 없음	축산물	모든 교역국	14/09/2023	G/SPS/N/ GBR/31
27	우크라이나	동물성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위생조건 제정 - 계란의 유통기한 연장(21→28일) 등	축산물	모든 교역국	07/04/2023	G/SPS/N/ UKR/198/ Add.1
28	유럽연합	사료첨가제로서 아타풀자이트(attapulgit)의 사용/ 시판 허용기간 연장(7년)	사료 및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EU/630
29	일본	사료첨가제의 규격 및 기준 신설 - 포름산(Formic acid)	사료 및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98
30	칠레	바다새의 배설물(guano)의 수입위생요건(안) 제정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불활화 처리 등 위생요건 제정	조류 배설물 (인산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CHL/752
31		식용 및 비식용 동물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사용허가 목록 개정 - 비타민, 아미노산, 응고제 등 목록 수록	사료 및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CHL/731/ Rev.1
32		수입축산물 허용목록 확대 - 캥거루/파충류/숙성육 및 동물부산물 등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CHL/753
33		고슴도치의 수입위생조건 의견수렴 공고	동물 (고슴도치)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CHL/754
34	태국	폴란드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류 지육의 잠정 수 입금지 조치(90일)	가금육 및 알가공품	폴란드	18/04/2023	G/SPS/N/ THA/644
35	튀르키예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안) 개정 - 밤버마이신(Bambermycin), 이미다클로프리드 (Imidacloprid)	축산물	모든 교역국	31/07/2023	G/SPS/N/ TUR/65/ Add.2

식물검역(49건)

긴급조치 통보문(5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1	대한민국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의 추가 - 특정 국가산Amydrium zippelianum의 신선 지하부 (4.18일 선적분부터 적용) 해당 국가: · 북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미국 · 중앙아메리카:모든국가들 · 남아메리카:모든국가들(칠레제외) · 아프리카:모든국가들 · 아시아: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중국(제한지역:광둥성 내광저우시,마오밍시,선전시,북건성:홍콩),인도,인도 네시아,일본,레바논공화국,말레이시아,오만,파키스탄, 필리핀,싱가포르,스리랑카,대만,태국,예멘 · 유럽 : 벨기에,덴마크,에스토니아,프랑스,헝가리,이탈리아, 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갈,슬로베니아,스웨덴,영국 · 오세아니아및태평양지역:호주(타즈메니아제외),코아일 랜드제도(뉴질랜드),피지,프랑스령폴리네시아,괌,하와 이군도,미크로네시아,뉴칼레도니아,뉴질랜드,니우웨 (뉴질랜드),놀픽섬(호주),팔라우,파푸아뉴기니,미국령 사모아,사모아,솔로몬군도,통가	식물 및 식물성 산물	다수 국가	18/04/2023	G/SPS/N/ KOR/248/ Add.22
2	러시아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halys)발생에 따른 북마 케도니아산 잠정 수입금지 대상 품목확대 - (기존) 사과, (개정) 식물검역품목	식물 및 식물성 산물	북마케도니아	03/04/2023	G/SPS/N/ RUS/256/ Corr.1
3	아르헨티나	수입검역조건 병해충에 ToBRFV(토마토 갈색 주름 과일 바이러스) 추가	병해충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ARG/261
4	일본	다수 국가산 대만 고무나무(Ficus microcarpa)의 긴급 수입금지 공고(병해충 Meloidogyne enterolobii 유입 방지를 위함) (5.29일)	식물(묘목)	다수 국가	29/05/2023	G/SPS/N/ JPN/1199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5	프랑스	신선 체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 활성성분 포스멧(phosmet)을 함유한 작물보호제를 체리 나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국가산에 한함	농산물	모든 교역국	26/03/2023	G/SPS/N/ FRA/19

일반 통보문(44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6	뉴질랜드	태국산 신선 용안(Longan)의 복숭아 명나방 방제를 위한 방사선 처리요건 변경 - (기준) 250Gy → (개정) 289Gy)	농산물	태국	30/06/2023	G/SPS/N/ NZL/712
7		한국산 신선배 식물검역조치 추가사항 제정 - 복숭아명나방 방제조치 부가사항 명시(6.30 시행)	농산물	호주; 대한민국; 대만; 태국	30/06/2023	G/SPS/N/ NZL/713
8		호주, 태국, 대만산 신선리치의 수입검역요건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5.12까지) - 복숭아명나방(<i>Conogethes punctiferalis</i>) 관리를 위한 방사선 처리요건 추가 등	농산물	호주; 대만; 태국	30/06/2023	G/SPS/N/ NZL/714
9		식물성 산물의 수입검역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 토양, 모래, 진흙 등(5.25까지)	식물 및 식물성 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NZL/715
10		재식용 다래속 식물의 수입위생기준 개정 - 생물학적 분석법 관련 모든 검사의무 삭제(ELISA 및 PCR로 대체)	농산물	모든 교역국	29/05/2023	G/SPS/N/ NZL/717
11		재식용 감귤류 식물의 수입위생기준 개정	농산물	모든 교역국	29/05/2023	G/SPS/N/ NZL/718
12		묘목(Nursery Stock)의 수입위생기준 개정 - 식물 유전물질(germplasm) 진단수단인 생물학적 지수 화의 삭제	식물(묘목)	모든 교역국	29/05/2023	G/SPS/N/ NZL/719
13		재식용 살구 식물체의 수입위생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NZL/720
14		파종용 종자의 수입위생기준 개정(안) 공고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NZL/721
15		대만산 신선 리치(<i>Litchi chinensis</i>)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농산물	모든 교역국	26/04/2023	G/SPS/N/ NZL/707/Add.1
16	니카라과	바나나시들음병 유입방지 조치 제정 - 관련 기주식물의 수입금지 조치 등 검역예찰 시스템 강화	병해충	모든 교역국	18/01/2023	G/SPS/N/ NIC/123
17	러시아	식물검역 규제(예찰) 절차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공고 - 수입검역 문제 발생시 선적물 처리 및 식물위생 위험평가 시스템의 이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RUS/264
18	멕시코	칠레산 귤(<i>Citrus reticulata</i>)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농산물	칠레	추후결정	G/SPS/N/ MEX/426
19		칠레산 신선 감귤류 과실 클레멘타인의 수입검역요건 의견 수렴 공고	농산물	칠레	추후결정	G/SPS/N/ MEX/427
20		칠레산 신선 레몬 과실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농산물	칠레	추후결정	G/SPS/N/ MEX/428
21		이탈리아산 오이 종자의 수입검역조건 제정	농산물	이탈리아	23/03/2023	G/SPS/N/ MEX/400/Add.1
22		일본산 벼의 수입검역조건 제정	농산물	일본	16/03/2023	G/SPS/N/ MEX/402/Add.1
23		과테말라산 복숭아의 수입검역조건 제정	농산물	과테말라	08/03/2023	G/SPS/N/ MEX/412/Add.1
24		기통보문 내 첨부문서 오타 자구수정 - 칠레산 신선 감귤의 수입검역요건	농산물	칠레	05/06/2023	G/SPS/N/ MEX/427/Corr.1
25		우루과이산 유채 종자의 수입검역조건 의견수렴 공고	농산물	우루과이	추후결정	G/SPS/N/ MEX/429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26	모로코	캐롭(Carob) 묘목의 생산, 관리, 포장 및 인증에 관한 기술 규정 초안	식물(묘목)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MAR/95
27		아르간(Argan) 묘목의 생산, 관리, 포장 및 인증에 관한 기술 규정 초안	식물(묘목)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MAR/96
28	미국	식물(절화)의 수입제한 조치 해제 공고 - 국화흰녹병(CWR) 관련 기주식물 절화 목록을 삭제함 (Chrysanthemum, Leucanthemella, Nipponanthemum)	화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USA/3379
29	브라질	미국산 식물체 콜레우스(Coleus)삼목의 식물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6.10까지)	화훼	미국	추후결정	G/SPS/N/BRA/2145
30		화훼 리시안서스(Eustoma spp.)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6.13까지)	화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BRA/2148
31		페루산 서양체꽃(Leucospermum spp.) 절화의 수입 검역조건 설정(5.2일)	화훼	페루	02/05/2023	G/SPS/N/BRA/2149
32		페루산 토마토 과실의 수입검역조건 설정(5.2일)	농산물	페루	02/05/2023	G/SPS/N/BRA/2150
33		페루산 왁스플라워 절화(Chamaelaucium uncinatum 및 Chamaelaucium megalopetalum)의 수입검역조건 설정(6.1일)	화훼	페루	01/06/2023	G/SPS/N/BRA/2151
34	인도	호주산 아보카도 관련 검역병해충 목록 확대(10종)의견 수렴 공고	병해충	호주	추후결정	G/SPS/N/IND/291
35		네팔산 사리수(Shorea robusta)의 검역요건 완화 - 사리수 종자/날알에 관한 부기사항 삭제	병해충	네팔	추후결정	G/SPS/N/IND/292
36	중국	중국 식물검역증명서 서식의 변경 - 일반 출입국 검사 및 검역 및 재수출용 증명서의 서식 변경('23.6.1일부터 적용, 유효기간 '23.12.31일까지)	식물 및 식물성 산물	모든 교역국	01/06/2023	G/SPS/N/CHN/1278
37	칠레	미국 미시간(Michigan)주산 감자(Solanum tuberosum) 과경의 수입을 위한 생산지의 등록 및 인정 공고	농산물	미국	14/03/2023	G/SPS/N/CHL/747
38		스페인 Murcia주산 포도생산지의 등록 및 인정 공고	농산물	스페인	20/03/2023	G/SPS/N/CHL/748
39		프랑스산 벚나무 및 자두 등 식물체 수입을 위한 생산지 등록 및 인정 공고	농산물	프랑스	23/08/2022	G/SPS/N/CHL/749
40		미국산 피스타치오 과실의 생산지 등록 및 인정 공고	농산물	미국	21/09/2022	G/SPS/N/CHL/750
41		에콰도르산 신선 바나나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농산물	에콰도르	18/04/2023	G/SPS/N/CHL/739/Add.1
42	키르기즈 공화국	식물 위생 검역 규제(예찰) 규제 절차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공고 - 수입 검역 문제 발생시 선적물 처리 및 식물위생 위험 평가 시스템의 이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KGZ/27
43	페루	스페인산 블루베리 묘목(Vaccinium spp.)의 수입검역 요건 의견수렴 공고 (7.16일까지)	농산물	스페인	추후결정	G/SPS/N/PER/1004
44		스페인산 블루베리 조직배양체 (Vaccinium spp., in vitro)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7.16일까지)	농산물	스페인	추후결정	G/SPS/N/PER/1005

식품안전(43건)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17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1	뉴질랜드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Mefentrifluconazole, Spinetoram, Tetraniliprole, 국내 보다 강화(포도, 옥수수, 복숭아, 배) *한국 수출품목 : (신선)포도, 배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NZL/716
2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안) 3종 의견수렴공고 - 설희사플로르(Sulfoxaflo) 국내보다 강화(커피원두)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USA/3374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3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트리넥사팍에틸(Trinexapac-ethyl) 국내기준 없음(농산물) *한국 수출품목: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05/04/2023	G/SPS/N/ USA/3376
4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국내보다 완화(망고, 파파야) *한국 수출품목: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29/03/2023	G/SPS/N/ USA/3375
5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에탈플루랄린(Ethalfuralin), 국내보다 강화(양파, 고구마) * 국내 수출품목: 고구마, 양파	농산물	모든 교역국	10/04/2023	G/SPS/N/ USA/3377
6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델타메트린(Deltamethrin), 국내보다 완화(두류) * 국내 수출품목: 건조 채두류	농산물	모든 교역국	04/04/2023	G/SPS/N/ USA/3378
7	우크라이나	농약의 안전사용 규정 및 위생기준 개정	농약	모든 교역국	11/04/2023	G/SPS/N/ UKR/199
8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브로모프로필레이트(bromopropylate), 클로리다존(chloridazon), 펜프로피모르프(fenpropimorph), 이마자퀸(imazaquin), 트랄코시딤(tralkoxydim), 국내기준 없음(마늘, 양파) *한국 수출품목: 마늘, 양파, 인조꿀	식품	모든 교역국	21/10/2023	G/SPS/N/ EU/527/Add.1
9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국내보다 강화(감자, 두류) *한국 수출품목: 감자(기타)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099/Rev.1
10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아메토트라딘(Ametoctradin), 국내기준 없음(버섯류) *한국 수출품목: (신선)큰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87
11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개정 - 아미실브롬(Amisulbrom), 시금치, 국내 기준보다 완화 *국내수출품목: 시금치류(신선,냉장)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88
12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개정 - 플루미옥사진(Flumioxazin), 사과, 국내 기준보다 강화 *국내수출품목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89
13		농약의 잔류허용수준 개정(안) -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국내보다 강화(당근) *한국 수출품목: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90
14		농약의 잔류허용수준 개정(안) -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 국내와 동일 (오이, 호박), 국내보다 완화(사탕수수, 상추, 양파) *한국 수출품목: 오이, 호박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91
15		농약의 잔류허용수준 개정(안) - 메탈알데하이드(Metaldehyde), 국내보다 강화(배추, 셀러리), 국내보다 강화(당근) *한국 수출품목: 배추, 아스파라거스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92
16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시메코나졸(Simeconazole), 국내기준 없음(옥수수, 호박, 쌀) *한국 수출품목: 옥수수, 호박류, 쌀가루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93
17		농약 잔류허용기준 공고 - 사료용 작물 내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국내보다 강화(두류) *한국 수출품목: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28/04/2023	G/SPS/N/ JPN/1171/Add.1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3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18	일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세푸록심(Cefuroxime), 국내기준과 동일(소근육, 소지방, 유) *한국 수출품목: 밀크, 크림, 델로우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94
19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수준 개정(안) - 디클록사실린(Dicloxacillin) * 국내보다 강화: 축산물(소) * 한국 수출품목: 쇠고기(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 라면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95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20	일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수준 개정(안) - 암프로리움(Ampolium), *국내보다 강화: 가금육 *한국수출품목: 닭고기(기타조제저장), 삼계탕 등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96
그 외 식품 규격 및 식품위생 관련 제·개정(23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21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전포장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정 의견수렴 공고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ZAF/80
22	대만	CCC코드(세관 분류코드)에 따른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에 관한 검사 대상 확대(49종) - 건조 병아리콩, Non-GMO유채씨, 참깨씨 등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TPKM/612
23	대한민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공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통관단계 부적합 범위의 명확화 및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제공 의무화 등)	농산물	모든 교역국	01/01/2024	G/SPS/N/ KOR/777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제정 - 건강기능성 식품의 시험법 개정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KOR/778
25	미국	식품첨가물인 스피루리나 추출물의 색소첨가제 사용 허가 공고 - 20도 미만 알코올(무알코올 포함)음료, 소스류, 샐러드 드레싱용 등	식품 첨가물	모든 교역국	13/12/2022	G/SPS/N/ USA/3169/ Add.2
26		색소첨가물 색소인 FD&C 적색3호 사용에 관한 의견 수렴일 연장 공고(5.18일까지) - 식품(식이보조제 등) 및 약물 사용허가	식품 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USA/3368/ Add.1
27	베트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공고 - 식용 냉동참치 제품 또는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전처 리 요건	수산물	모든 교역국	12/12/2023	G/SPS/N/ VNM/149
28	부룬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제정 - 생 다짐육 제품의 위생요건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BDI/49
29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제정 - 생 다짐육 제품의 위생요건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BDI/51
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제정 - 달걀의 오염, 시료채취, 보관, 동물용 의약품 MRL 기준 등	달걀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BDI/52
31	영국	수입 식품에 대한 신규 검역요건 간소화 공고 - 필수 제출자료 완화(37개→24개), 자료제출 중복의무 삭제, 관련 자료제출용 웹페이지 개발, 영국 내 어류의 자료제출 의무 삭제 등	식품	모든 교역국	31/10/2023	G/SPS/N/ GBR/30
32	우크라이나	계란의 수입위생조건 채택 - 품질 및 중량에 따른 분류, 라벨링, 기록관리 요건 등	식품	모든 교역국	07/10/2023	G/SPS/N/ UKR/195/ Add.1
33		수산물 위생증명서 서식 및 수입조건 제정 - 검역 불필요 수산물 목록 제정, 원산지 표시 요건 등	수산물	모든 교역국	11/10/2023	G/SPS/N/ UKR/196/ Add.1
3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제정 - 식품 향미료/첨가물/효소	식품 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UKR/200
35	유럽연합	꿀 및 양봉제품 등 생산지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 미허가 가공시설에서 유래한 경우 12개월까지 수입 가능(유예기간)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EU/631
36		식품첨가물 지방산 모노 - 디글리세라이드(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의 규격 개정	식품 첨가물	모든 교역국	18/01/2023	G/SPS/N/ EU/632
37		특정 신선육, 수산물, 유제품, 알류에 대한 구체적 위생 조건 설정 - 육류의 수송 시 표면온도, 최대 기온 등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EU/633
38	인도	유아영양용 식품의 식품안전기준 개정 - 셀레늄, 철, 비오틴 및 망간 허용한도 설정	식품 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IND/293
39	일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제정 - 식수(mineral water)	식수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JPN/1186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40	칠레	통조림 동물성 제품 및 그 제품의 수입위생조건(안) 제정 - 밀봉요건, 증명서, 라벨링, 운송요건 등	식품 (통조림)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CHL/751
41	캐나다	식품첨가물인 제2인산칼륨의 사용 허가 목록 확대 - 사워크림(Sour)내 사용허가	식품 첨가물	모든 교역국	31/03/2023	G/SPS/N/ CAN/1306/ Add.1
42		참쌀떡(모찌 및 당고) 내 미생물(Bacillus flexus AE- BAF)에서 유래한 베타 - 아밀라아제의 사용 허가 공고	식품	모든 교역국	28/03/2023	G/SPS/N/ CAN/1497
43	콜롬비아	식용 및 사료용 수생동물 양식장의 등록 요건 제정(안) 의견수렴 공고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결정	G/SPS/N/ COL/345



* 통보문 원문 및 번역본 관련 상세내용은 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